

동작구의회공고 제2019-14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4월 5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무료셔틀버스의 신속한 운행을 보장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고,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에 일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 (안 제9조의2)
-교통약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규정 신설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4월 11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324, FAX 817-1474, E-mail : dongsuyeom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5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사회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)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·노인·임산부·영유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법 제34조제4항 및 <u>5항</u>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5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9조의2(사회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)</u> <u>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·노인·임산부·영유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